

고 양 탄 현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락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19. 8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 계획지구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지구이며, 장기미집행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녹지축 연계를 통한 생태축 유지 및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내 주택수급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함
- 계획지구는 경의중앙선, 파주와 일산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98호선, 탄중로 등과 연결하여 광역교통 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탄현택지지구, 중산택지지구 등 택지 개발지구가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파주운정지구, 덕이지구등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1.2 계획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정면적 : 415,745m²]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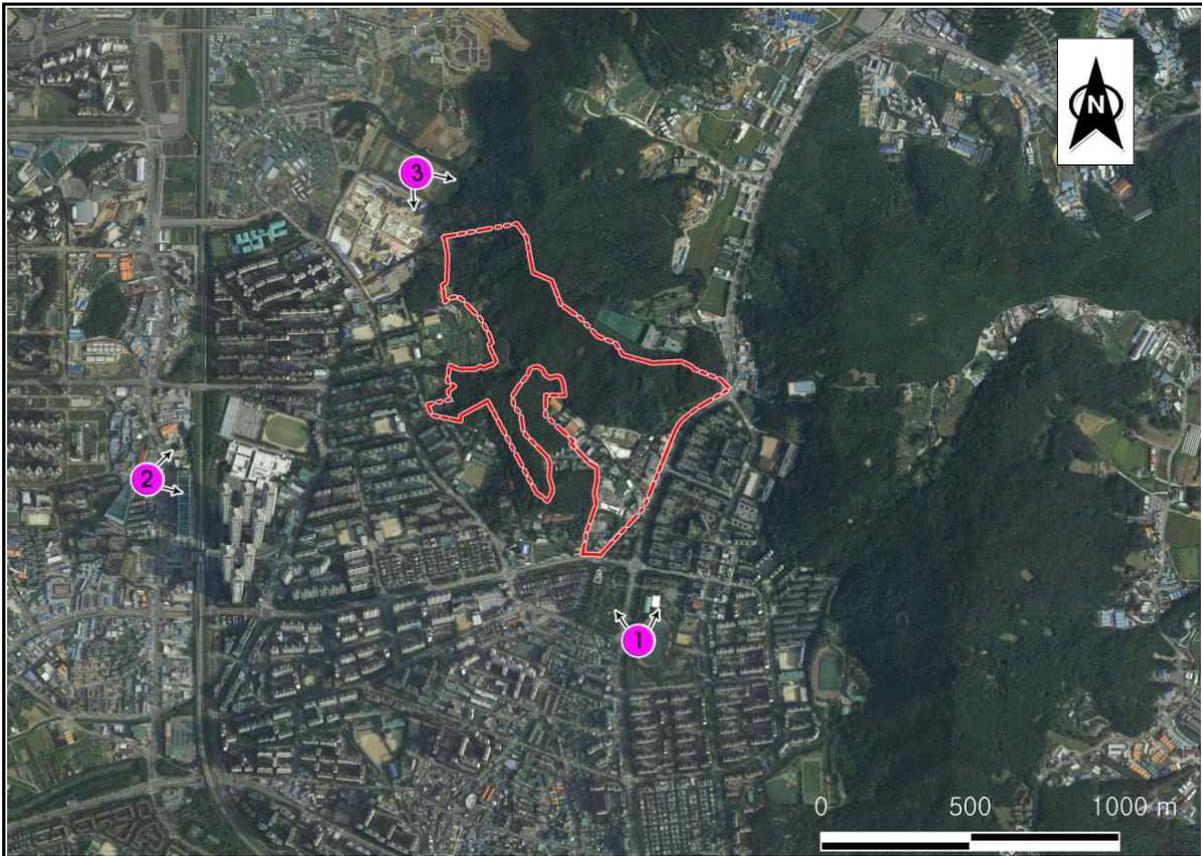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나.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 계 획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 계 획 내 용 : 계획면적 415,745m²
 - 계획인구 8,923인, 계획세대 3,628호
-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3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2019.04.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LH → 국토교통부)
- 2019.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19.07.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9.0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2019.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19.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예정)



(그림 1.2-2) 계획지구 위성사진(1)



(그림 1.2-3) 계획지구 위성사진(2)



(그림 1.2-4) 계획지구 현황사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 의 일 : 2019. 7. 15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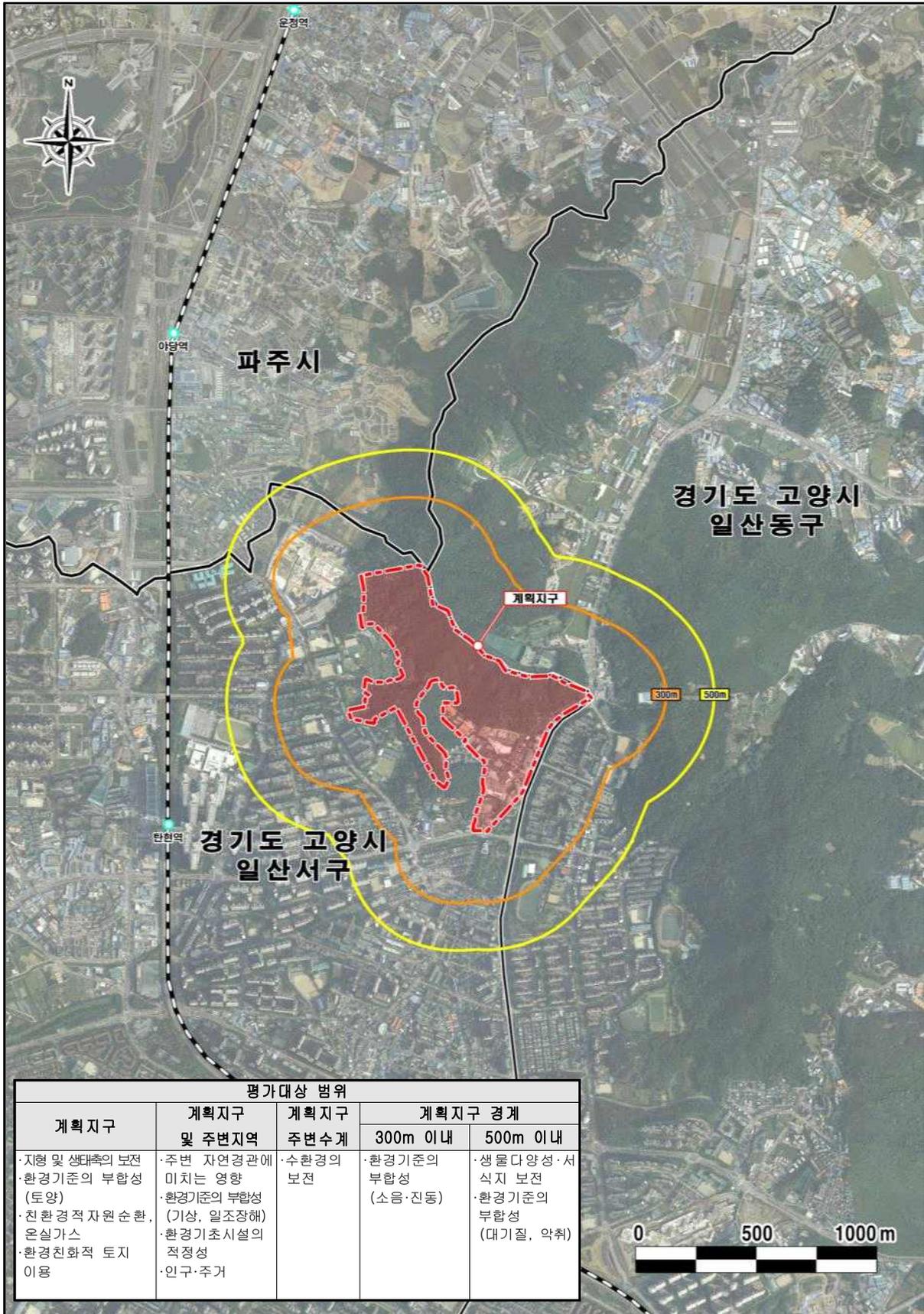
〈표 2.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자연 환경 의 보전	입지 의 타 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한산천, 대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생활 환경 의 안 전 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공작업 및 투입장비에 의한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난방연료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악취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표 2.2.1-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소 음 · 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경계 3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일 조 장 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 순환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투입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 운영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온 실 가 스	• 공사장비 가동 및 연료사용,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	• 계획지구	• 운영시	
		인구 및 주거	•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주) '악취'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으로 선정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그림 2.2.1-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표 2.2.1-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사업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 대기질 예측에 기초자료로 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 기 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운영시 주변 산업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 500m 이내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장비 가동 및 연료사용,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지역	•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수환경	수 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한산천, 대화천)	• 공사시 • 운영시
	수리·수문	• 사업지구 주변지역 주요 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수립 •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 유출량 변화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한산천, 대화천)	• 공사시 •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 사업지구	• 공사시
	지형·지질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 강우시 토사유출 • 비옥토 유실	• 사업지구	• 공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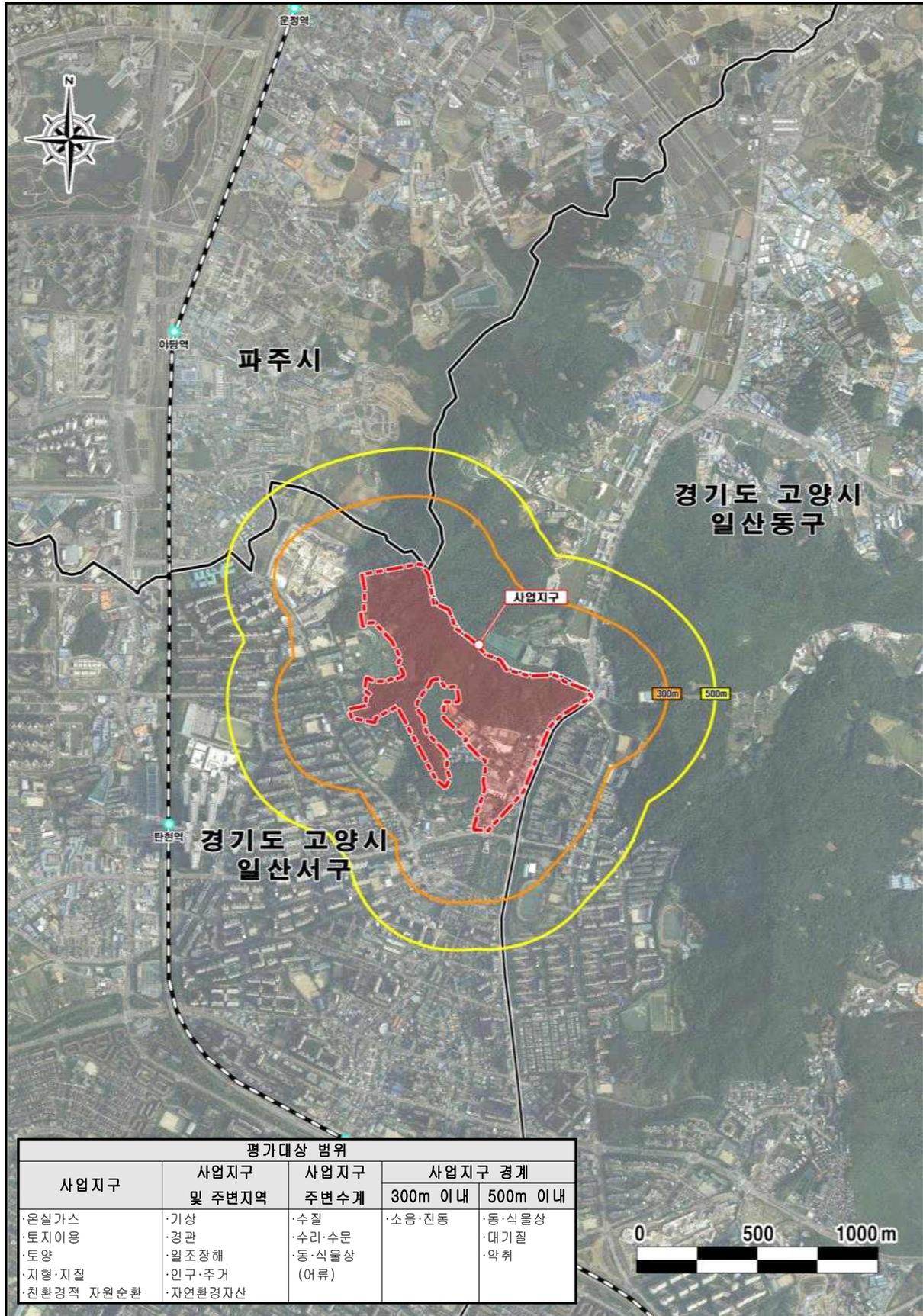
〈표 2.2.1-2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운영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 사업지구 경계 3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경 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주) '악취'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그림 2.2.1-2) 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하였음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이며,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 【수요·공급】 , 【입지】 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표 2.2.2-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선정방법	계획지구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2-2〉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평가영역	개발기본계획 수립시(Action)	개발기본계획 미 수립시(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장기 미 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무분별한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을 저촉하지 않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국토환경평가등급상, 계획지구는 1~5등급 지역이며, 계획의 특성상 2등급지는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	○ 계획지구 주변지역에 택지지구 등이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공원 해제시 생태계 훼손 가능성 있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저감대책 수립으로 훼손을 최소화	○ 지형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공원 해제시 개별적인 개발로 인한 훼손가능성 있음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주민의 여가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기능 확보	○ 생활환경 변화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함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미미한 생활오염 물질의 발생이 예상됨 ○ 각종 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선정(안)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의 실효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2.2-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 분	대안 1	대안 2
토지 이용 계획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황룡산과 고봉산을 연결하여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성 ○ 계획지구 주변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주거용지를 계획하고 주거용지 중앙에 상업시설용지 배치 ○ 단지 입주자 편의를 위해 탄중로와 고봉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 계획 ○ 대로변과 주거지 완충을 위한 녹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주변에 있는 황룡산과 연결되는 공원녹지 구성 ○ 계획지구 주변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주거용지를 계획하고 고봉로변 상업시설용지 계획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봉로변 공원부지 확보로 외부 접근성 강화 ○ 주거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수요자 주거안정에 기여 ○ 대로변(고봉로) 연결도로 최소화로 고봉로 교통흐름 방해 최소화 및 계획지구 내 안전한 교통계획 수립 ○ 중밀의 인구밀도로 대안2에 비해 주거공간의 쾌적성 향상 ○ 계획지구 중앙에 상업시설용지가 위치하여 주거용지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봉로변 상업시설용지 배치로 중산택지지구와의 연계성 강화 ○ 상업시설용지 출입구 분산으로 계획지구 내부 교통 원활 ○ 주거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수요자 주거안정에 기여 ○ 인구밀도가 높아 쾌적성이 다소 낮음 ○ 고봉로변 상업시설용지 배치로 대로변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혼잡 야기 ○ 중산택지지구에서 탄현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지단절에 따른 거주자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약화
선정(안)	○	-
	○ 계획지구 주변 황룡산과 고봉산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고, 계획지구 중앙에 상업시설용지를 배치하여, 대로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대안1이 대안2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상됨	

3)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 및 인근 지역의 지구계, 토지이용현황, 관계기관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적,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지구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2.2-4〉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토지 이용 계획														
계획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m²)</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규모</td> <td>415,745</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규모	415,745	1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m²)</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규모</td> <td>575,977</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규모	575,977	100.0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규모	415,745	100.0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규모	575,977	100.0												
특징	○ 미집행시설인 탄현근린공원과 계획지구 남측의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절 토지가 발생치 않도록 지구계 수립	○ 계획지구 남서측 기개발지 및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제외한 공원 인근지역을 모두 포함한 지구계 수립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형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계획으로 절·성토로 인한 지형훼손 최소화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도출 ○ 부지의 부정형으로 인한 가용지 확보가 불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홀트복지시설 및 연립주택단지를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함으로써 주거지역 정주여건 향상 ○ 홀트복지시설 및 연립주택, 지장물 등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사업성 감소) ○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및 이전지 필요 												
선정(안)	○	-												
	○ 편입면적을 최소화 하고, 주변 지형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계획으로 지형훼손 최소화가 가능한 대안1이 대안2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상됨													

2.2.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 [별표1]에 규정된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였으며, 계획 및 주변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3-1〉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접촉여부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 【입지】 및 【수요·공급】 등의 대안 설정 및 분석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등의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2등급이상 지역 훼손 여부 ○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절·성토 등 계획 수립시 지형변화 예상 ○ 각종 보전지역 분포여부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검토 		
	수 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부유토사,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필요 ○ 수 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수질오염총량 관련 사항 검토 ○ 인근 수계(한산천 등)의 수리·수문 현황 및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검토 필요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 활용
			대 기 질	○ 건설장비 가동 및 토공발생, 차량운행, 연료사용에 따른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저감방안 수립 필요
			악 취	○ 주변지역 악취발생시설에 의한 영향검토
			토 양	○ 계획 시행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 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 건설장비 가동, 차량운행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분석 필요
			일조장해	○ 주택단지 등 신축 건물 입지에 따른 일조영향 예상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 오수 및 폐기물의 환경기초 시설과 연계처리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지속 가능한 주택단지 및 환경 친화적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파악 및 편입 토지 보상대책 수립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유입에 따른 영향검토 ○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2) 평가범위 및 방법

- 계획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의 특성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의 비교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500m 이내 • 현황조사(3회)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및 산림축 단절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 (근경·중경·원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한산천 등) • 현황조사(2회) - 하천수 : 3지점 - 지하수 : 5지점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시설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산정, 평가 • 용수공급 및 발생오수 연계처리 등의 저감방안 및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할당 가능여부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기상대 또는 필요시 AWS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 2.2.3-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8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누적 평가 고려) 	
		약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약취 영향 파악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 현황조사(2회) : 6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8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통행차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영향 예측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계획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기초시설 연계 처리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을 산정 후,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인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05호, 2018.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 01,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기상, 악취, 인구, 주거 등 기초 자료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4개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환경, 위락,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산업 등 5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2.3-3〉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합 계	13항목	4항목	5항목
대기환경	○ 대기질, 온실가스	○ 기상, 악취	-
수환경	○ 수질, 수리·수문	-	○ 해양환경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	○ 위락,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	-	○ 인구, 주거	○ 산업

- 사업계획 및 지역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 13개 항목, 현황조사 4개 항목, 제외 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그 사유를 제시함

〈표 2.2.3-4〉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환경영향평가)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현황	제외		
	13개	4개	5개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화, 주요 종(법적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 서식여부 및 보전 대책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
	악취	-	○	-	▶주변지역 악취발생시설에 의한 영향검토
	온실가스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수 환경	수질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 수계(한산천 등) 영향 검토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수리·수문	○	-	-	▶인근 수계(한산천 등)의 수리·수문 현황조사 및 토사유출 및 홍수위, 홍수량 검토를 통해 재해안전성 검토
	해양환경	-	-	○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양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교통소음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위락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경관	○	-	-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주택단지 등 신축 건물 입지에 따른 일조영향 예상
	전파장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주거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2)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5〉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생태 환 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사업시행으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기상대 또는 필요시 AWS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대 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8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누적 평가 고려) • 면오염원은 AERMOD, 선오염원은 CALINE3 등의 확산모델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영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을 산정 후,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수 환 경	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한산천 등) • 현황조사(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 : 3지점 - 지하수 : 5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 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예측 • 운영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표 2.2.3-5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수 환 경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한산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현황조사(2회) : 6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절·성도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토사유출, 비옥도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현황조사(2회) : 8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소음·진동현황 조사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실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운영시 통행차량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조망점별 경관시물레이션 실시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사회·경제 환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지표·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 동·식물상 조사는 계획지구 내 및 인접수계를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조사 실시
- 이후 환경영향평가지 현장조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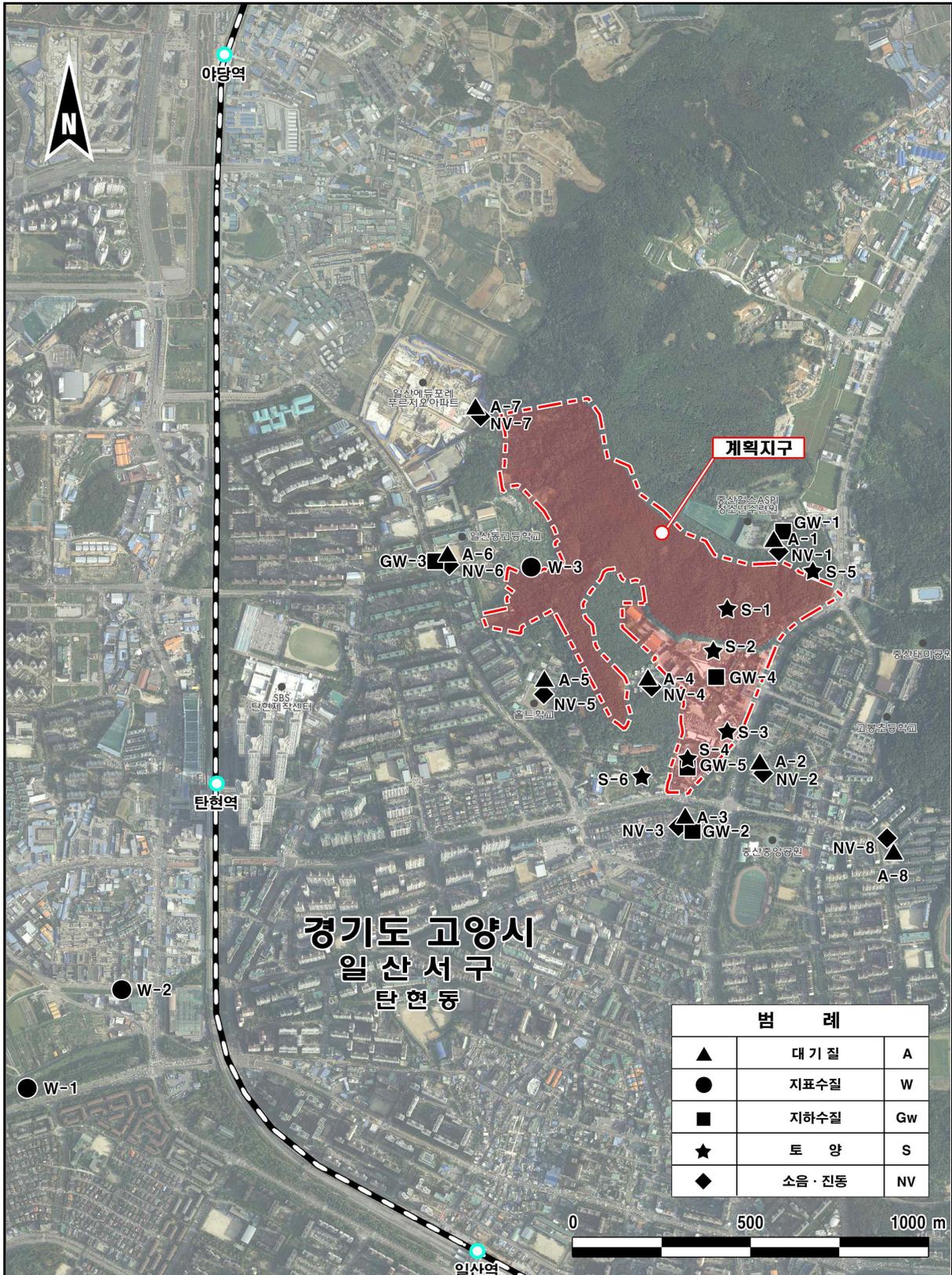
〈표 2.2.4-1〉 환경질 현황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 지점	조사횟수		비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 기 질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8지점	2회	2회	-
지표수질	유량, 수온, pH, DO, BOD, COD, TOC, SS, T-N, T-P, Chl-a, 총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인, PCBs, Pb, Cr ⁶⁺ , PCE, 전기전도도, ABS	3지점	2회	2회	-
지하수질	pH, COD, NH ₃ -N, NO ₃ -N, SO ₄ ²⁻ , Fe, Zn, F, Cl ⁻ , 페놀, Cu, Mn, As, Hg, Cr ⁶⁺ , Cd, Pb, Al, 맛, 냄새, 색도, 탁도, TS, 총경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5지점	2회	2회	-
토 양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6지점	2회	2회	-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8지점	2회	2회	-

〈표 2.2.4-2〉 조사지점

평가항목		조사지점	비고
지표수질	W - 1	장월평천(지방하천) 합류지점 한산천(소하천) 상류 500m 지점	한산천
	W - 2	장월평천(지방하천) 및 대화천(소하천) 합류지점	대화천
	W - 3	계획지구 서측 경계부 구거	-
지하수질	GW - 1	계획지구 북측 중산힐스 청소년 수련원	-
	GW - 2	계획지구 남측 한빛도서관 인근	공공시설
	GW - 3	계획지구 서측 교육시설	일산동고등학교
	GW - 4	계획지구 내부	-
	GW - 5	계획지구 내부	-
대기질	A - 1	계획지구 북측 중산힐스 청소년 수련원 인근	-
	A - 2	계획지구 동측 인접 주거지역(공동주택)	중산2단지 코오롱아파트
	A - 3	계획지구 남측 한빛도서관 인근	공공시설
	A - 4	계획지구 인접 주거지역(공동주택)	아크리움빌 아파트
	A - 5	계획지구 서측 교육시설	홀트학교
	A - 6	계획지구 서측 교육시설	일산동고등학교
	A - 7	계획지구 북측 인접 주거지역(공동주택)	일산에듀포레 푸르지오아파트
	A - 8	계획지구 동남측 주거지역(공동주택)	동부건영아파트
토양	S - 1	계획지구 내 임야(공공시설용지)	임야
	S - 2	계획지구 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인근(공공시설용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S - 3	계획지구 내 주유소 인근(공공시설용지)	주유소
	S - 4	계획지구 내 버스차고지 인근(공공시설용지)	버스차고지
	S - 5	계획지구 북측 경계부 임야	-
	S - 6	계획지구 남측 인접 주거지역	-
소음·진동	NV - 1	계획지구 북측 중산힐스 청소년 수련원 인근	-
	NV - 2	계획지구 동측 인접 주거지역(공동주택)	중산2단지 코오롱아파트
	NV - 3	계획지구 남측 한빛도서관 인근	공공시설
	NV - 4	계획지구 인접 주거지역(공동주택)	아크리움빌 아파트
	NV - 5	계획지구 서측 교육시설	홀트학교
	NV - 6	계획지구 서측 교육시설	일산동고등학교
	NV - 7	계획지구 북측 인접 주거지역(공동주택)	일산에듀포레 푸르지오아파트
	NV - 8	계획지구 동남측 주거지역(공동주택)	동부건영아파트

주) 1.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2.4-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기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6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할 지자체와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